



행복knowhow 연금저축계좌(집합투자증권) 핵심 설명서

이 핵심설명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연금저축계좌(집합투자증권) 가입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실제 계약은 연금저축계좌(집합투자증권) 설정약관이 적용됩니다. 또한 연금저축계좌(집합투자증권)는 다수의 연금전용 집합투자증권(이하 '연금펀드'라 한다)을 보유하는 계좌로서, 보유하는 연금펀드의 개별 집합투자계약 및 수익증권 저축 약관이 동시에 적용됩니다.

1 연금저축계좌 제도개요

구 분	내 용
상품 특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, 연간 최대 400만원한도(단, 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300만원) 내 납입액의 12%(요건에 따라 15%) 세액공제 가능 •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(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) 기타소득세 발생으로 세제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가입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내 거주자
가입 금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규시 : 연금펀드 상품별 최저 가입금액 1천원 이상(MMF 및 상품매매(종목전환) 신규시 제외) • 추가 납입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금저축계좌 기준(약정한 분배비율 선택시) 최저 납입금액 5만원 이상 - 연금펀드 기준(고객 지정 선택시) 상품별 최저 납입금액 1천원 이상
납입 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 금융기관 합산 연 1,800 만원 이내 (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)
적립 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5년 이상
연금 수령 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5년 이상 납입 & 만 55세 이후, ②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, ③ 연금개시신청 필수
연금수령 한도	$\left(\frac{\text{연금저축계좌의 평가액}^*}{(11-\text{연금수령연차}^{**})} \times 120\% \right)$ <p>* 연금계좌의 평가액은 연금수령 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일로, 이후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매년 재계산되며,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연금외 수령으로 간주됩니다.</p> <p>** 연금수령연차는 적립기간 5년 이상과 만 55세가 충족되어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합니다. 단, 2013년 이전 가입한 연금저축은 연금수령연차를 6년차부터 시작합니다</p>
연금외 수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금수령요건 이외의 자금 인출(연금수령개시 전 중도해지) 및 연금수령 한도 초과 인출
일부 인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세제외금액 중 세액공제한도 초과금액 내에서 일부 인출 가능
세액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당해연도 납입액(한도 400만원, 단, 총급여 1억 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300만원)의 12%(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,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,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 15%)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자의 해당

	과세기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함. 단, 적립기간 중 중도해지시 해지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입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불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전 과세기간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액공제 가능
보수 및 수수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각 펀드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 (집합투자규약, 투자설명서, 해당 집합투자업자 및 KEB하나은행(www.kebhana.com), 금융투자협회(www.kofia.or.kr) 연금저축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)
계좌 이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저축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

2 연금저축계좌 세제제도

구 분	납입 시	인출 시	
		연금수령 시	연금외수령 시
세제종류	세액공제	연금소득세 주 1) (5.5%~3.3%, 지방소득세 포함) 연간 1,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신고대상	기타소득세 주 2) (16.5%, 지방소득세 포함) 분리과세

주1) 연금소득세 = {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(연도별 세액공제한도 범위 내)+운용수익금} X 연금소득세율*

* 연금소득세율(연령별 차등적용)

구 분	만70세 미만	만70세 이상 만80세 미만	만80세 이상
연금소득세율	5.5%	4.4%	3.3%

주2) 기타소득세 = {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(연도별 세액공제한도 범위 내)+운용수익금} X 기타소득세율**

**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연금외수령시 연금소득세 5.5%~3.3%(지방소득세 포함, 분리과세)

- ① 천재지변
 - ②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
 - ③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질병·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
 - ④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
 - ⑤ 은행의 영업의 정지, 영업인·허가의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
- 다만,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해지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

➢ 소득 원천에 따른 과세 여부 및 소득의 종류

구 분	과세 대상 여부	연금 수령시 과세	연금외 수령시 과세
세액공제 받은 납입액	○	연금소득세	기타소득세
운용 수익금	○	연금소득세	기타소득세
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	X	과세제외	

- 연간 연금소득금액(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 기준)이 1,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.
-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- 연금 지급 시,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인출순서 ①과세제외금액(당해연도 납입금액→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액), ②과세대상금액(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+운용수익금)에 따라 소득원천별로 차등하여 과세 됩니다.
- 위 세제 관련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3 상품 특징

구 분	내 용
상품 종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금저축계좌(집합투자증권)
상품 개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금저축계좌 개설 후 유동자산 관리 기능의 MMF 를 포함하여 최대 5개의 연금펀드 편입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MMF 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매수와 연금펀드의 환매자금 일시 보유를 위해 사용 - MMF 는 금융시장 관망 등에 따른 일시적 유동자금의 단기운용을 위해 입금 가능하나, 자산형성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입금거래를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• 보유 연금펀드 분배비율 지정으로 입금 금액 자동 분산 투자 • 연금펀드 간 종목 전환 및 매매를 통해 시장상황을 고려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• 연금저축계좌 내 집합투자증권(펀드)의 운용성과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
투자자예탁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금저축계좌(집합투자증권)에 납입한 자금은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까지 투자자예탁금으로 별도 예치·운용되고 예탁금 이용료(예탁에 따른 투자손익)는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되며, 연금저축계좌(집합투자증권) 내 MMF 를 매수함
입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전에 약정한 “상품별 분배비율”을 기준으로 연금펀드 별로 입금됨. (“상품별 분배비율” 미지정시 MMF 매수) 다만, 고객이 영업점에 내점할 경우 “상품 지정”의 방법을 선택하여 보유한 상품별로 입금금액을 지정하여 입금 가능
일부 인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유상품을 한 개 또는 다수로 지정하여 환매할 수 있음 • 다수의 상품을 일괄 환매하여 인출할 경우 매도한 개별 상품의 환매자금이 나오는 날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MMF 를 매입한 후 환매주기가 가장 긴 상품의 환매자금이 나오는 날에 환매하여 인출금액을 지급 • 과세제외금액 중 세액공제한도 초과금액 내에서 일부 인출 가능
종목전환 및 매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유한 상품이 전환형 집합투자기구일 경우 해당 전환형 집합투자기구 내에서 전환할 권리를 가지며, 종목 전환 관련 업무절차는 개별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름 • 전환형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 상품간 매매를 할 수 있으며, 상품 간 매매 거래시 매도한 상품의 환매자금이 나오는 날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MMF 를 매입하며, 매입할 상품의 체결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MMF 를 환매하여 매입
평가금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당일자 기준으로 연금저축계좌(집합투자증권)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연금펀드 평가금액의 합계액

납입금액	• 고객이 납입한 원금을 기준으로 하며, 일부 인출이 있을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한 인출순서를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
연금 개시 신청	• 연금지급은 연령 조건(만 55세 이상)과 가입기간 조건(5년 경과)를 모두 충족해야 연금수령 개시 신청이 가능하며, 희망연금개시일자가 도래하기 이전에 당행에 “연금수령 개시신청서”를 제출하여야 연금지급이 개시됨. 단, 연금수령 개시 신청일 이후에는 추가 납입을 할 수 없음
환매수수료	• 환매하는 집합투자증권(펀드)의 환매수수료 부과기간 및 저축기간에 따름
양도 및 담보제공	• 연금저축계좌(집합투자증권)는 양도가 불가하며, 본인명의 대출에 한하여 담보제공이 가능함

4 가입시 유의사항

- 연금저축계좌(집합투자증권) 내 연금전용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대상, 환매방법,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
- 연금저축계좌(집합투자증권)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,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
- 연금저축계좌를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외수령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부과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연금개시 희망일이 도래하기 전에 당행에 “연금수령 개시신청서”를 제출하셔야 연금수령이 개시됩니다.
-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입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며,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이후에는 추가 납입이 불가합니다.
-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따라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이 있는 저축자는 연금수령 개시 신청 및 연금계좌 해지시(일부 인출 포함) 연금보험료 등 소득·세액공제 확인서(세무서 발급) 제출 및 연금납입내역 확인(은행연합회 조회시스템 이용)을 통하여 세액공제 배제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.
- 연간 연금소득금액(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 기준)이 1,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.
- **하나은행**(www.kebhana.com) 금융투자협회(www.kofia.or.kr) 웹사이트에서 연금저축계좌 수익률, 수수료율, 유지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가입하신 연금저축계좌의 수익률은 ‘연금펀드 수익률 보고서’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e-mail, 우편(자택 또는 직장) 중 수령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핵심설명서에서 안내한 세금제도 또는 상품내용을 관계 법령이나 약관 등에서 변경한 경우 변경된 내용이 적용됩니다.
- 이 상품은 **하나은행 IPS**섹션에서 개발한 금융상품입니다. 자세한 상품문의는 **하나은행**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1599-1111(서비스 코드: 펀드상담 053)로 연락 바랍니다. 상품 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(민원)이 있을 경우 고객의 소리(080-933-1111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kebhana.com)에 문의할 수 있고,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